

## 2017년도 제1회 부경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

2017년도 제1회 부경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6월 27일

부경대학교총장

###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렬	직 급	직무분야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지
행정	행정서기보	인사·교육훈련분야	1명	부경대학교 (총무과)

###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3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 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된 자
    - ※ 단,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 가능한 자 응시 가능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자격요건(서류전형에만 적용, 인정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요건	담당예정업무
행정 서기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li> <li>·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 직무분야에서 「공무원 임용시행령」 별표9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li> <li>· 임용예정 직급과 동일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HRM)–교육(HRD) 방향설정 및 직원 핵심역량 모델링 구축</li> <li>· 역량 모델링을 기반한 직급별, 직무별 자체 교육 개발운영</li> </ul>

※ 관련 직무분야 :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 업무

※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4 시험방법

### ①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 공무원임용시행령 제29조3항

○ 서류전형 기준

-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 직무수행계획의 우수성, 응시자격과 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직무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

## ②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대상: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공직관·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기준 및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5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6 시험일정

구분	일자	비고
공고기간	'17. 6. 27.(화) ~ 7. 10.(월)	본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17. 7. 5.(수) ~ 7. 10.(월)	부경대학교 총무과 (대연캠퍼스 본관 2층)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7. 7. 14.(금)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

구분	일자	비고
면접시험	'17. 7. 20.(목)	면접일정은 추후 공고 예정 본교 본관 2층 208호실
합격자 발표	'17. 7. 28.(금)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임용(예정)	'17. 8월 중	신원조회 등 자료 완료 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17. 7. 5.(수) ~ 7. 10.(월)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공휴일 및 토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부경대학교 총무과(대연캠퍼스 본관 2층)

○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주소: (48513)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대연동) 부경대학교 총무과

- 우편접수는 '17. 7. 10.(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반드시 “응시원서”라고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응시료 교부를 위한 **회송용 봉투 동봉 요망** ☞ 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인 후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응시수수료, 사진 포함)

· 응시원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응시원서 수수료: 5,000원권(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② 이력서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

- ④ 자기소개서 1부
-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 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

-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확인자의 확인과 연락처가 있는 것으로 제출하며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미인정함
- ※ 시간제 근무의 경우 한 주(周)당 근무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4대보험 납부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 이어야 함

## 8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실시 30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재교부시 동일 원판의 사진 1매 지참)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부경대학교 총무과로 문의 바람(☎ 051-629-5111)

붙임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 1식. 끝.